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1. 13 선고 2019가단2758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4. 7. 26. 접수 제11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김포등기소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서호원

별지